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355회국회 제 2 호 (임시회·폐회중)

국회사무처

- 시 2018년1월23일(화) 일
-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О	의사일정 상정의 건12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백재현·원혜영·박남춘·김경협·
	김성찬·김민기·설훈·노웅래·안규백·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1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
	권성동·이장우·이우현·홍문종·홍철호 의원 발의) ·······1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유성엽·김경진·정동영·
	이상돈・최경환(국)・이찬열・오제세・박준영・장병완・장정숙・박주선・채이배・김삼화・박주
	현・이용호・주승용・김병관・김광수・이종걸・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1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이학영·김
	철민·윤후덕·이철희·서영교·이해찬·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39) ·······1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도자·홍의락·한정애·전재수·
	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신동근·박재호 의원 발의) ······1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회·정인화·최경환(국)·최도
	자・손금주・김광수・이용주・조배숙・김경진・김동철・박주현・유성엽・주승용・김관영・이
	용호・신용현・박준영・장정숙・이동섭・송기석・장병완・오세정・김삼화・권은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677)

147.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7.6.27~2017.12.31.)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문미옥·김병관·김영주·원혜영· 최인호·백재현·안규백·권칠승·신경민·박남춘·전해철 의원 발의) ································ 1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김종회·임 종성·윤후덕·전해철·김해영·유은혜·전재수·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 1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채이배·유종오·최경환(국)·정인 화 · 문미옥 · 박광온 · 황희 · 김종대 · 남인순 · 박경미 · 유승희 · 윤후덕 · 유은혜 · 김종훈 · 임종 성 · 백재현 · 신창현 · 강창일 · 김정우 · 박남춘 · 위성곤 · 김광수 · 김해영 · 이훈 · 김영춘 · 강병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윤관석·박경미·전재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종훈·추혜선·유은혜·김해영·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유은혜・김병관・채이배・어기구・ 김해영ㆍ제윤경ㆍ이재정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언주ㆍ오제세ㆍ이철희ㆍ서영교ㆍ전혜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4) 13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박덕흠·윤소하·김성태·김세연· 김삼화ㆍ김상훈ㆍ이명수ㆍ이만희ㆍ김도읍 의원 발의)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학영ㆍ전현희ㆍ남인순ㆍ윤호중ㆍ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박주민·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이원욱ㆍ손금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어기구·김해영·안규백·박정·김 성수ㆍ전혜숙ㆍ김정우ㆍ변재일ㆍ서영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13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교·김삼화·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노회찬· 이정미·김종대·정동영·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3) ··············· 13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권미혁 • 황주홍 • 김경진 • 박홍근 • 손혜원·박남춘·신창현·남인순·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 14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손혜원・송 기현・신창현・오제세・윤관석・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 … 14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두관·김종민·김현미·박광온·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 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 14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김정우·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 추혜선 · 정성호 · 김경진 · 어기구 · 김종회 · 이찬열 · 김종훈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윤소하・

추혜선ㆍ정성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어기구ㆍ김종회ㆍ이찬열ㆍ김종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신창현ㆍ

```
김정우・황주홍・정동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14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윤관석·이재정·홍영표·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추혜선·이정미·정성호·조배숙·
 김종훈・김종회・신창현・김정우・백혜련・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277) ....... 14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김성원・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박재호·
 박찬대 • 김정우 • 윤후덕 • 이훈 • 박정 • 송옥주 • 송기헌 • 채이배 • 어기구 • 신창현 • 김병관 • 박
 남춘·소병훈·이정미 의원 발의) ...... 14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설훈·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경진·권은희·오세정·장정숙·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
 노회찬 · 권미혁 · 김종훈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 14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유승희 · 배덕광 · 윤소하 · 경대수 ·
 황주홍ㆍ김재경ㆍ이혜훈ㆍ박용진ㆍ원혜영ㆍ박덕흠ㆍ이태규ㆍ강병원ㆍ이철희ㆍ박범계ㆍ박재호ㆍ
 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16) ...... 14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경대수·
 황주홍・김재경・이혜훈・박용진・원혜영・박덕흠・이태규・강병원・이철희・박범계・박재호・
 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737) ...... 14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기·이찬열·
 신경민·윤종오·우원식·권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0) ...... 14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창일·김영춘·김정우·김종훈·
 김현권・민홍철・박남춘・박재호・박주민・서영교・서형수・소병훈・송옥주・윤소하・이원욱・
 이정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 ······· 14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성원·김순례·민경욱·박덕흠·
 박순자・송희경・원유철・이우현・이현재・정갑윤・조원진・지상욱 의원 발의) ……………… 15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장정숙·신용현·김병기·
 이동섭·정인화·이태규·김삼화·최도자 의원 발의) ·························15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김종대・이정미・윤소하・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태규・조배숙・안철수・김경진・
 김동철・박선숙・이용주・박준영・최경환(국)・김종훈・추혜선・윤소하・양승조・서영교・김삼
 화 · 오세정 · 신용현 · 권은희 · 주승용 · 이동섭 · 박주선 · 장병완 · 김성식 · 김수민 · 손금주 · 송
 기석・김중로・윤영일・김관영・최도자・김종회・장정숙・정동영・박지원・유성엽 의원 발의)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정재호ㆍ소병훈ㆍ진선미ㆍ손혜원ㆍ
 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5031) ....... 15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이개호·전재수·이학영·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찬대·이철희·문미옥·강창일·
 위성곤·안민석·김병기·송옥주·최인호·박광온·최운열·유동수·권미혁·박남춘·김영호·
```

```
조승래・이춘석・김상희・유은혜・신창현・표창원・전현희・이재정・설훈・윤후덕・안호영・
 김현권·김철민·제윤경·고용진·김병욱·강병원·박경미·김종민·우원식·전해철·정재호·
 소병훈·백혜련·김영진·김병관·박완주·임종성·기동민·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 ...... 15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권성동·정양석·정운천·오신환·
 이군현 · 이학재 · 김성태 · 하태경 · 김현아 · 홍철호 · 김세연 · 박인숙 · 이진복 · 강길부 · 홍일표 ·
 여상규·김재경·이종구·김학용·정병국·장제원·박성중·김무성·김영우·홍문표·주호영·
 김용태·유승민·유의동·이혜훈·이은재 의원 발의) ·························15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진선미·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상도·권석창·김도읍·김명연·
 김정재ㆍ김현아ㆍ윤상현ㆍ이양수ㆍ조훈현 의원 발의)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오신환・장제원・박인숙・정운천・
 김성태・이진복・하태경・강길부・주호영・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5595) ……… 15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원혜영 · 유승희 · 이용득 · 김두관 ·
 박주민·제윤경·강병원·유동수·설훈·김철민·최운열·김병기·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설훈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중로·전혜숙·김정우·이동섭·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백재현ㆍ김경진ㆍ박용진ㆍ
 김종민・박홍근・박정・김철민・박남춘・금태섭・유동수・김수민・표창원・손혜원・김성수・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정유섭・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정우ㆍ소병훈ㆍ
 박남춘·백재현·표창원·김영호·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 16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성수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종훈ㆍ
 유은혜·박홍근·고용진·김수민·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 ·················16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홍문표・주호영・김무성・이종구・
 유승민·하태경·정운천·정병국·홍철호·황영철·정양석·여상규·김성태·김재경·이학재·
 오신화·김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16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진·이태규·
 김종회ㆍ김삼화ㆍ오세정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 의원 발의) …… 16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표창원·노웅래·김영호·박정·김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조승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
 전혜숙 · 유동수 · 강창일 · 우원식 · 전재수 · 어기구 · 강훈식 · 문미옥 · 강병원 · 제윤경 · 박경미 ·
 이용득・백재현・박찬대・설훈・유은혜・안호영・김철민・송영길・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전재수ㆍ박남춘ㆍ신창현ㆍ송옥주ㆍ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 전혜숙ㆍ박영선ㆍ윤관석ㆍ김태년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30) ………16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인재근· 정성호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종오ㆍ박홍근ㆍ송기헌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 ……………… 16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경진ㆍ정인화ㆍ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병욱·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 김철민 · 김한정 · 문미옥 · 박정 · 백혜련 · 설훈 · 소병훈 · 신창현 · 심 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 표창원·송기헌·진영·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16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노웅래·김경협· 김병기 · 김병욱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춘 · 김철민 · 김한정 · 문미옥 · 박정 · 백혜련 · 설훈 · 소 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 송기헌·진영·최우열·최인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238) 16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조배숙·오세정·김삼화·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훈·정동영·문진국·김종대·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관석·안민석·유은혜·전혜숙·김민 기・이찬열・윤호중・정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 16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 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석·표창원·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정우·김병욱·채이배·박범계·장정 숙・안호영・박용진・박남춘・소병훈・민병두・송옥주・노웅래・권미혁・박정 의원 발의) 17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민·박정·소 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수・윤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478) …………17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영춘ㆍ김성찬ㆍ 윤후덕·장정숙·박정·홍철호·이양수·이동섭·박준영·윤소하·황영철·김철민·김용태·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범계·전혜숙·홍익표·백혜련·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진·김경진·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권미혁ㆍ이용득ㆍ신창현ㆍ김상희ㆍ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천・이종구・ 지상욱 • 정양석 • 유승민 • 박명재 • 김세연 의원 발의) …………………………………………………………………………… 17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전희경ㆍ이헌승ㆍ 여상규・홍철호・경대수・유승희・강병원・박용진・원혜영・이철희・박재호・이태규・정인화・ 송옥주·윤소하 의원 발의) ······· 17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상희·이인영·

	박홍근·김영진·오영훈·설훈·정재호·소병훈·강창일·박정 의원 발의)17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유승희·민병두·송기헌·어기구·
	신창현 · 노웅래 · 정재호 · 박남춘 · 전현희 · 고용진 · 김영호 · 김경협 · 박찬대 · 강창일 · 송옥주 ·
	김상희 · 백혜련 · 위성곤 · 이재정 · 소병훈 · 김철민 · 김병욱 · 조승래 · 김민기 · 박완주 · 오제세 ·
	안민석·이수혁·박광온·심기준·유동수·전해철 의원 발의)17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철희·윤소하·박주민·원혜영·
	송옥주·신창현·김철민·소병훈·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17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신창현·정성호·고용진·김정우·
	유동수·심기준·최명길·민병두·김관영 의원 발의)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해영·손혜원·박경미·박정·조
	승래·김병욱·박남춘·안규백·박주민 의원 발의) ·······················17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은권·윤영석·추경호·박완수·
	김진태·윤한홍·김석기·주광덕·정갑윤 의원 발의)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이종배·이철규·염동열·김석기·
	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헌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17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유동수·곽대훈·최연혜·이채익·
	김병관·김성원·정태옥·권석창·함진규·김종석 의원 발의)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변재일·설훈·위성곤·윤
	소하·정춘숙·조승래·최명길·홍익표 의원 발의)17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곽대훈·이채익·염동열·
	김정재·박명재·정갑윤·박덕흠·성일종 의원 발의)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채이배·박주민·김경진·노회찬·김종
	대·김종민·이정미·윤소하·김영호·권미혁·표창원·한정애·심상정·이철희 의원 발의) ···· 18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
	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8343)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후덕·윤한홍·김명연·박명재·
	이양수·박덕흠·유민봉·조훈현·윤영일 의원 발의)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김민기·조승래·서형수·
	박재호・전재수・윤호중・박광온・박홍근・윤소하・이찬열・최인호・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
	호 8385) ······ 18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김종대·심기준·이정미·
	김종민·심상정·윤소하·박주민·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 ················· 18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신경민·권미혁·소병훈·
	박정·윤소하·정재호·김현권·양승조 의원 발의) ························18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갑윤·황주홍·장정숙·이찬열·
	최경환(국)·김경진·김광수·김종회·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18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하태경·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병관·김삼화·
	박주선 · 박주현 · 박준영 · 오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호 · 이종걸 · 이찬열 · 장병완 ·
	작전수·전동영·주승용·채이배·최경화(국)·화주호 의원 반의)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노회찬・
	이정미·김종대·정동영·손혜원·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18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주선 • 박광온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18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맹우·박덕흠·김성태·홍문
	표·김광림·이우현·김기선·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
	창·김명연·정태옥·배덕광·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18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
	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2)18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윤후덕 • 이원욱 • 황희 •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추미애·권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18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훈·송기석·윤후덕·이개호·송옥주·
	이춘석·김철민·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 ·······18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문미옥·이춘
	석·김정우·박경미·김성수·박정 의원 발의) ·······18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
	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 18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황주홍·황희·
	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숙·박주민·진선
	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19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회
	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19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이원욱·황희·박홍근·박재호·
	박광온·김해영·정재호·설훈 의원 발의) ······19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홍문표・이동섭・김관영・조배
	숙·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중로·김영춘·김철민 의원 발의)19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강창일・서영
	교・소병훈・김정우・박찬대・강병원・윤관석・박주민・윤소하・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 19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철・주호영・이은
	재·하태경·지상욱·정양석·김영우·박인숙·김학용 의원 발의) ········19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유승희·박정·인재근·김철민·김상희·
	이재정·김정우·표창원·진선미·김영진·박남춘·김영호 의원 발의)19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민병
	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1) ·······19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이원욱·김상
	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19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염동
	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19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강병원・김병기・김영주・김철민・박주
	민·박광온·박정·이원욱·유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19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
	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19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
	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
	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
	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19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종・김명연・윤영
	석·이채익·곽대훈·김기선·이헌승·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19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박경미 • 설훈 • 이학영 • 윤
	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19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홍익표·황희·박재호·윤관석·문
	미옥·김해영·김태년·제윤경·추미애·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 ···················19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 • 윤후덕 • 이원욱 • 황희 • 정재호 • 박
	광온·김병관·추미애·권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19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문미옥·
	이춘석·김정우·김성수·박정·권미혁 의원 발의) ·······19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용태·김승희·임이자·김종석·
	김성태·이은권·유재중·김규환·유민봉 의원 발의) ·······19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민병두 • 최명길 • 위성곤 • 김정우 • 전해
	철·유동수·고용진·김상희·유은혜·강창일·황주홍·박재호·박홍근·이학영 의원 발의) ····· 19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진선미·
	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20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 20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선동·이현재·하태경·김성원·
	김성찬·함진규·이종배·조경태·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조승래·백혜련·김병욱·소병훈·
	신창현·박영선·어기구·강병원·최운열·안호영 의원 발의) ···································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
	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20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
	심상정·이원욱·김세연·김현아·윤종오·조배숙 의원 발의)20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선동·함진규·이종배·김성찬·
	정갑윤・하태경・박명재・김석기・경대수・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3)20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해찬ㆍ노웅래ㆍ박찬대ㆍ신창현ㆍ
	송옥주·제윤경·권미혁·유동수·김종민 의원 발의)20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유동수·어기구·신창현·제윤경·
	유은혜·고용진·이용득·김철민·권미혁·민홍철·박정·기동민 의원 발의)20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
	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발의) ······ 20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
	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
	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
	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규환・권석창・안
	산수·김용태·김무선·김종선·저히경·경대수·유의동 의원 박의)

147.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7.6.27~2017.12.31.)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 …24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헌법개정 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인 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특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는 우리국가의 기틀을 어떻게 잘 마련하느냐이고 또 이것의 하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어떻게 잘 해 내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최선을다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태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규범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새로운 규범에 맞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말 민심 그대로의,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중앙선

관위의 김대년 사무총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에서 법률안 142건 및 청원 4건과 기존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의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에 관한 논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법률안과 청원을 일괄 상정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이어서 기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관해서 전 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을 포함해 서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14분)

○위원장 김재경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할 법률안과 청원은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해 온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59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 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백재현·원혜영·박남 춘·김경협·김성찬·김민기·설훈·노웅 대·안규백·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

- 수・황영철・권성동・이장우・이우현・홍 문종·홍철호 의원 발의)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유성엽·김경 진 · 정동영 · 이상돈 · 최경환(국) · 이찬 열 · 오제세 · 박준영 · 장병완 · 장정숙 · 박 주선 · 채이배 · 김삼화 · 박주현 · 이용호 · 주승용 · 김병관 · 김광수 · 이종걸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박경미 · 설 훈ㆍ이학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서 영교·이해찬·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 호 53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도자·홍의락·한정 애 · 전재수 · 이찬열 · 신창현 · 김정우 · 김 병육 · 윤후덕 · 서형수 · 박남춘 · 신동근 · 박재호 의원 발의)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회·정인화·최경 환(국)·최도자·손금주·김광수·이용 주·조배숙·김경진·김동철·박주현·유 성엽 · 주승용 · 김관영 · 이용호 · 신용현 · 박준영 · 장정숙 · 이동섭 · 송기석 · 장병완 · 오세정ㆍ김삼화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 번호 677)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문미옥·김병관·김영 주 · 원혜영 · 최인호 · 백재현 · 안규백 · 권 칠승·신경민·박남춘·전해철 의원 발의)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고용진 · 황희 · 이찬 열 · 김종회 · 임종성 · 윤후덕 · 전해철 · 김 해영 · 유은혜 · 전재수 · 박경미 · 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076)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채이배・윤종오・최경 환(국) · 정인화 · 문미옥 · 박광온 · 황희 · 김종대 · 남인순 · 박경미 · 유승희 · 윤후 덕 · 유은혜 · 김종훈 · 임종성 · 백재현 · 신 창현 · 강창일 · 김정우 · 박남춘 · 위성곤 · 김광수 · 김해영 · 이훈 · 김영춘 · 강병원 · 유성엽 · 정동영 · 인재근 · 전혜숙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윤관석·박경 미·전재수·원혜영·임종성·인재근·김 영진·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8)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종훈・추혜선・유은 혜·김해영·권미혁·윤종오·박경미·송 옥주·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0)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유은혜·김병관·채이 배 ·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손 혜원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세 · 이철희 · 서영교 · 전혜숙 · 양승조 의원 발의)(의안 번호 14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박덕흠·윤소하·김성 태 · 김세연 · 김삼화 · 김상훈 · 이명수 · 이 만희·김도읍 의원 발의)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전현희·남인 순 · 윤호중 · 이춘석 · 김영진 · 김해영 · 양 승조·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 영 · 박주민 · 박남춘 · 유은혜 · 소병훈 · 김 종훈·송옥주·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 호 1579)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원욱·손금주·이동 섭 · 조배숙 · 전현희 · 기동민 · 설훈 · 이개 호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9)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어기구·김해영·안규 백 · 박정 · 김성수 · 전혜숙 · 김정우 · 변재 일·서영교·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3)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 교·김삼화·인재근·진선미·설훈·박주 민·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2)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 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동영 · 양 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 호 2173)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황주홍·김경 진 · 박홍근 · 손혜원 · 박남춘 · 신창현 · 남 인순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5)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 수 · 손혜원 · 송기헌 · 신창현 · 오제세 · 윤 관석 · 이찬열 · 전재수 · 최인호 · 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5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김두관·김종민·김현 미・박광온・박정・박준영・이언주・정동 영·천정배 의원 발의)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 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 영훈 · 윤관석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조배숙 · 황주홍 의원 발의)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 진 · 김정우 · 표창원 · 진선미 · 박남춘 · 최경 환(국)·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9)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 근 · 윤소하 · 추혜선 · 정성호 · 김경진 · 어 기구 · 김종회 · 이찬열 · 김종훈 · 위성곤 · 표창원·신창현·김정우·황주홍·정동 영·전해철·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의안번호 3214)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 근・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채 이배 · 어기구 · 김종회 · 이찬열 · 김종훈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황주 홍 · 정동영 · 전해철 · 서영교 · 박남춘 · 임 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3239)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서영교·윤관석·이재 정 · 홍영표 · 손혜원 · 강병원 · 전해철 · 이 찬열·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258)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추혜선·이정미·정성 호·조배숙·김종훈·김종회·신창현·김 정우 · 백혜련 · 전혜숙 · 조정식 의원 의)(의안번호 3277)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 석 · 김성원 · 한선교 · 김선동 · 정우택 · 조 훈현·권석창·심재철 의원 발의)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 표 · 박재호 · 박찬대 · 김정우 · 윤후덕 · 이 훈・박정・송옥주・송기헌・채이배・어기 구·신창현·김병관·박남춘·소병훈·이 정미 의원 발의)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 래 · 설훈 · 이해찬 · 손혜원 · 황주홍 · 지상 욱·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김경진·권은희·오세 정 · 장정숙 · 박주현 · 채이배 · 김종회 · 주 승용·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 정・추혜선・노회찬・권미혁・김종훈・서 영교·김영춘 의원 발의)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 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 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 · 박재호 · 전희경 의원 발 의)(의안번호 3716)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 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 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 · 박재호 · 전희경 의원 발 의)(의안번호 3737)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 기 · 이찬열 · 신경민 · 윤종오 · 우원식 · 권 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의안번호 4130)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창일·김영춘·김정 우·김종훈·김현권·민홍철·박남춘·박 재호・박주민・서영교・서형수・소병훈・ 송옥주·윤소하·이원욱·이정미·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146)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김성원·김순례·민경 욱 · 박덕흠 · 박순자 · 송희경 · 원유철 · 이 우현 · 이현재 · 정갑윤 · 조원진 · 지상욱 의원 발의)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황주홍·장정숙·신용 현 · 김병기 · 이동섭 · 정인화 · 이태규 · 김 삼화·최도자 의원 발의)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김종대·이정 미 · 윤소하 · 김종훈 · 심상정 · 이종걸 · 윤 종오·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779)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이태규·조배숙·안철 수 · 김경진 · 김동철 · 박선숙 · 이용주 · 박 준영·최경환(국)·김종훈·추혜선·윤소 하 · 양승조 · 서영교 · 김삼화 · 오세정 · 신 용현 · 권은희 · 주승용 · 이동섭 · 박주선 · 장병완 · 김성식 · 김수민 · 손금주 · 송기 석 · 김중로 · 윤영일 · 김관영 · 최도자 · 김 종회 · 장정숙 · 정동영 · 박지원 · 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5006)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 미·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 영진·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 (의안번호 5031)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광온·이개호·전재 수 · 이학영 · 박홍근 · 설훈 · 안민석 · 박경 미·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307)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박찬대·이철희·문미 옥·강창일·위성곤·안민석·김병기·송 옥주・최인호・박광온・최운열・유동수・ 권미혁 · 박남춘 · 김영호 · 조승래 · 이춘 석 · 김상희 · 유은혜 · 신창현 · 표창원 · 전 현희 · 이재정 · 설훈 · 윤후덕 · 안호영 · 김 현권 · 김철민 · 제윤경 · 고용진 · 김병욱 · 강병원 · 박경미 · 김종민 · 우원식 · 전해 철 · 정재호 · 소병훈 · 백혜련 · 김영진 · 김 병관·박완주·임종성·기동민·홍영표· 김현미 의원 발의)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 대표발의)(황영철·권성동·정양석·정운 천 · 오신환 · 이군현 · 이학재 · 김성태 · 하 태경 · 김현아 · 홍철호 · 김세연 · 박인숙 · 이진복 · 강길부 · 홍일표 · 여상규 · 김재 경 · 이종구 · 김학용 · 정병국 · 장제원 · 박 성중・김무성・김영우・홍문표・주호영・ 김용태 · 유승민 · 유의동 · 이혜훈 · 이은재 의원 발의)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 민 · 진선미 · 정춘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 정애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곽상도·권석창·김도 읍·김명연·김정재·김현아·윤상현·이 양수·조훈현 의원 발의)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오신환·장제원·박인 숙 · 정운천 · 김성태 · 이진복 · 하태경 · 강 길부·주호영·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 (의안번호 5595)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원혜영·유승희·이용 득·김두관·박주민·제윤경·강병원·유 동수 · 설훈 · 김철민 · 최운열 · 김병기 · 박 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2)
- 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설훈·김영 호 · 김상희 · 김두관 · 제윤경 · 이용득 · 강 병원·김병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5634)
- 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 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 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1)
- **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중로·전혜숙·김정 우・이동섭・김경진・홍영표・조배숙・이 용호 · 천정배 의원 발의)
- 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서영교·백재현·김경 진 · 박용진 · 김종민 · 박홍근 · 박정 · 김철 민·박남춘·금태섭·유동수·김수민·표 창원 · 손혜원 · 김성수 · 유승희 · 김영춘 · 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2)

- 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 훈·정유섭·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 석창·이명수 의원 발의)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김영진·진선미·김정우·소병훈·박남춘·백재현·표창원·김 영호·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60)
-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성수·이용득·서영 교·김종훈·유은혜·박홍근·고용진·김 수민·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
- 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홍문표·주호영·김무성·이종구·유승민·하태경·정운천·정병국·홍철호·황영철·정양석·여상규·김성태·김재경·이학재·오신환·김영우의원 발의)(의안번호 6759)
-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 진·이태규·김종회·김삼화·오세정·천 정배·김관영·박선숙·최도자·윤영일· 박준영 의원 발의)
-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표창원·노웅래·김영 호·박정·김상희·원혜영·위성곤·이철 희·이원욱·심기준·박주민 의원 발의)
-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이철희·조승래·김영호·권미혁·전혜숙·유동수·강창일·우원식·전재수·어기구·강훈식·문미옥·강병원·제윤경·박경미·이용득·백재현·박찬대·설훈·유은혜·안호영·김철민·송영길·김경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839)
-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전재수·박남춘·신창 현·송옥주·노웅래·박홍근·안민석·소 병훈·조승래·설훈·이용득·이해찬 의원 발의)
-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박영선·윤관석·김 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6930)

-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 래·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관석·윤 종오·박홍근·송기헌·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장정숙·김경 진·정인화·황주홍·노웅래·김관영·이 용호·윤영일 의원 발의)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 협·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 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송기헌·진영·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5)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강훈식·고용진·노웅 래·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 영주·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 박정·백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 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 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래·송기헌· 진영·최운열·최인호·표창원 의원 발의) (의안번호 7238)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조배숙·오세 정·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최 도자·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2)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김종훈·정동영·문진 국·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 혜선·이용호·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3)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윤관석·안민석·유은 혜·전혜숙·김민기·이찬열·윤호중·정 춘숙·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7295)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 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

- 승조 · 정동영 · 서영교 · 채이배 · 김세연 · 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1)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 석 · 표창원 · 박용진 · 신창현 · 최명길 · 강 훈식·노웅래·금태섭 의원 발의)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정우·김병욱·채이 배 · 박범계 · 장정숙 · 안호영 · 박용진 · 박 남춘・소병훈・민병두・송옥주・노웅래・ 권미혁 · 박정 의원 발의)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 민·박정·소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 수·윤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 (의안번호 7478)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재원·엄용수·김영 춘 · 김성찬 · 윤후덕 · 장정숙 · 박정 · 홍철 호・이양수・이동섭・박준영・윤소하・황 영철 · 김철민 · 김용태 · 오제세 · 윤영일 · 신상진 · 백재현 · 조배숙 · 이원욱 · 유성엽 의원 발의)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박범계·전혜숙·홍익 표·백혜련·서영교·이종걸·인재근·이 원욱·박찬대 의원 발의)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 진 · 김경진 · 이용호 · 노웅래 · 김영주 · 최 운열·장병완·김관영·김성수 의원 발의)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 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 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5)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 천 · 이종구 · 지상욱 · 정양석 · 유승민 · 박 명재·김세연 의원 발의)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전희 경 · 이헌승 · 여상규 · 홍철호 · 경대수 · 유 승희·강병원·박용진·원혜영·이철희· 박재호・이태규・정인화・송옥주・윤소하 의원 발의)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 표발의)(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상희· 이인영 · 박홍근 · 김영진 · 오영훈 · 설훈 · 정재호 · 소병훈 · 강창일 · 박정 의원 발의)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유승희·민병두·송기 헌 · 어기구 · 신창현 · 노웅래 · 정재호 · 박 남춘 · 전현희 · 고용진 · 김영호 · 김경협 · 박찬대 · 강창일 · 송옥주 · 김상희 · 백혜 련 · 위성곤 · 이재정 · 소병훈 · 김철민 · 김 병욱 · 조승래 · 김민기 · 박완주 · 오제세 · 안민석·이수혁·박광온·심기준·유동 수·전해철 의원 발의)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철희 · 윤소하 · 박주 민 · 원혜영 · 송옥주 · 신창현 · 김철민 · 소 병훈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8)
- 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신창현·정성호·고용 진 · 김정우 · 유동수 · 심기준 · 최명길 · 민 병두·김관영 의원 발의)
- 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해영·손혜원·박경 미 · 박정 · 조승래 · 김병욱 · 박남춘 · 안규 백·박주민 의원 발의)
-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은권·윤영석·추경 호 · 박완수 · 김진태 · 윤한홍 · 김석기 · 주 광덕·정갑윤 의원 발의)
- 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이종배·이철규·염동 열 · 김석기 · 이은재 · 권석창 · 이양수 · 이 헌승·강석진·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
- 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유동수·곽대훈·최연 혜 · 이채익 · 김병관 · 김성원 · 정태옥 · 권 석창·함진규·김종석 의원 발의)
- 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변재일·설 훈 · 위성곤 · 윤소하 · 정춘숙 · 조승래 · 최 명길 · 홍익표 의원 발의)
- 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곽대훈·이채 익 · 염동열 · 김정재 · 박명재 · 정갑윤 · 박 덕흠 · 성일종 의원 발의)

- 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채이배·박주민·김경 진 · 노회찬 · 김종대 · 김종민 · 이정미 · 윤 소하 · 김영호 · 권미혁 · 표창원 · 한정애 · 심상정ㆍ이철희 의원 발의)
- 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 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 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헌 · 유승희 · 이용 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 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 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 호 8343)
- 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윤후덕・윤한홍・김명 연 · 박명재 · 이양수 · 박덕흠 · 유민봉 · 조 훈현 · 윤영일 의원 발의)
- 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김민기·조승 래 · 서형수 · 박재호 · 전재수 · 윤호중 · 박 광온 · 박홍근 · 윤소하 · 이찬열 · 최인호 · 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8385)
-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김종대・심기 준 · 이정미 · 김종민 · 심상정 · 윤소하 · 박 주민·김종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13)
- 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신경민·권미 혁 · 소병훈 · 박정 · 윤소하 · 정재호 · 김현 권・양승조 의원 발의)
- 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갑윤·황주홍·장정 숙·이찬열·최경환(국)·김경진·김광 수·김종회·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
- 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 연 · 김영우 ·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 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 경·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 9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병 관·김삼화·박주선·박주현·박준영·오 제세 · 유성엽 · 이동섭 · 이상돈 · 이용호 ·

- 이종걸 · 이찬열 · 장병완 · 장정숙 · 정동 영·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 99.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 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정동영 · 손 혜원・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
- 1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 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박경 미·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 춘 · 김철민 · 이해찬 · 이철희 의원 발의)
- 1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 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맹우·박덕 흠ㆍ김성태ㆍ홍문표ㆍ김광림ㆍ이우현ㆍ김 기선 · 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3)
- 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 혜 · 이채익 · 권석창 · 김명연 · 정태옥 · 배 덕광ㆍ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
- 10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 표발의)(박주민·김병관·어기구·김해 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언주 · 오 제세 · 이해찬 · 이철희 · 양승조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02)
- 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 표발의)(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 · 추미애 · 권칠 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 10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 표발의)(이언주・이훈・송기석・윤후덕・ 이개호 · 송옥주 · 이춘석 · 김철민 · 백재 현 · 윤관석 의원 발의)
- **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 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 호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박경미 · 김 성수 · 박정 의원 발의)
- 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 표발의)(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 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 재호 · 유동수 · 전해철 · 김상희 · 유은혜 · 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 표발의)(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 황주홍 · 황희 · 서영교 · 박남춘 · 박주민 · 소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 **1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 표발의)(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 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 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 1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 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 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 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 표발의)(권칠승·김병관·이원욱·황희· 박홍근 · 박재호 · 박광온 · 김해영 · 정재 호 · 설훈 의원 발의)
- 1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 표발의)(정인화·윤영일·홍문표·이동 섭 · 김관영 · 조배숙 · 박준영 · 김종회 · 황 주홍 · 유성엽 · 김중로 · 김영춘 · 김철민 의원 발의)
- 1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 표발의)(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 근 · 강창일 · 서영교 · 소병훈 · 김정우 · 박 찬대 · 강병원 · 윤관석 · 박주민 · 윤소하 · 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1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 표발의)(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 철 · 주호영 · 이은재 · 하태경 · 지상욱 · 정 양석·김영우·박인숙·김학용 의원 발의)
- 1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 표발의)(소병훈・유승희・박정・인재근・ 김철민 · 김상희 · 이재정 · 김정우 · 표창 원·진선미·김영진·박남춘·김영호 의원 발의)
- 1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 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 희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 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 호 6781)
- 1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 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 희 · 이원욱 ·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 철희·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5)
- 1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 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은재·이철 우 · 김기선 · 염동열 · 이종배 · 이명수 · 권 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2)

- 1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 표발의)(신창현·강병원·김병기·김영 주 · 김철민 · 박주민 · 박광온 · 박정 · 이원 욱·유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 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 현 ·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 선미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666)
-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 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 철 · 신창현 · 안민석 · 어기구 · 김두관 · 제 윤경 ·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헌 · 유승희 · 이용 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 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 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 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 종 · 김명연 · 윤영석 · 이채익 · 곽대훈 · 김 기선·이헌승·민경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0)
-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박광온 · 박경미 · 설 훈ㆍ이학영ㆍ윤후덕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 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홍익표·황희·박재 호 · 윤관석 · 문미옥 · 김해영 · 김태년 · 제 윤경·추미애·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
-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 희 ·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 · 추미애 · 권 칠승·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 **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 호・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성수・박 정 · 권미혁 의원 발의)
- 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김용태·김승희·임이 자 · 김종석 · 김성태 · 이은권 · 유재중 · 김 규환·유민봉 의원 발의)
- 1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민병두·최명길·위성 곤·김정우·전해철·유동수·고용진·김 상희 · 유은혜 · 강창일 · 황주홍 · 박재호 ·

박홍근ㆍ이학영 의원 발의)

- 1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 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 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 1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 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 민석·김수민 의원 발의)
- 1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선동·이현재·하태 경·김성원·김성찬·함진규·이종배·조 경태·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7)
- 1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조승래·백혜련·김병 욱·소병훈·신창현·박영선·어기구·강 병원·최운열·안호영 의원 발의)
- 1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 희·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 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
- 1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 대·윤소하·심상정·이원욱·김세연·김 현아·윤종오·조배숙 의원 발의)
- 13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선동·함진규·이종 배·김성찬·정갑윤·하태경·박명재·김 석기·경대수·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 호 7293)
- 1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이해찬·노웅래·박찬 대·신창현·송옥주·제윤경·권미혁·유 동수·김종민 의원 발의)
- 1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유동수·어기구·신창 현·제윤경·유은혜·고용진·이용득·김 철민·권미혁·민홍철·박정·기동민 의원 발의)
- 1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 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 선미·이재정 의원 발의)
- 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 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 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 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 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 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 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 1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규환· 권석창·안상수·김용태·김무성·김종 석·전희경·경대수·유의동 의원 발의)
- 1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
- 1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강석호·이명수·정운천·홍문표·김성태·김현아·장제원·박성중·김학용 의원 발의)
- **143**.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 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
- **14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 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145.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 **146.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5시15분)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 146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7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법률안 142건과 청원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는 PC 단말기 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146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PC 단말기 내에 자료로 준비해 드린 위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다음 의사일정인 기존의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순서에 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대체토론도 그 보고를 받으신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광덕 위원 오늘 상정한 150건에 가까운 안 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은 언제쯤 하시는 것이지 9.7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검토보고 다음에 대 체토론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다 논의되었던 것을 좀 있으면 전문위원이 보고하니까 검토보고 는 그 보고로 갈음하고 그 이후에 대체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라는 것이 무 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재경** 보고 이후에.
- ○주광덕 위원 오늘?
- ○위원장 김재경 예.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사일정 합 의할 때 오늘 많은 법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 지난해 4개월 동안 가동되었던 정 치개혁특위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또 정개특위에 활동하지 않 았던 위원들은 갑자기 150건의 법률안 및 청원 안건을 주고 오늘 대체토론을 다 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안건을 위원회 동의를 해 줌으로써 했는데 대체토론은 전체회의하는 다 른 날 하시는 것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체토 론이 이루어지지 전혀 준비도 안 했고 오늘 처리 할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회의진행이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대체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이 안건을 상정하실 때 제가 이의제기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하루빨리 정개 특위나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그 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 과 우리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자세가 있기 때문 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흔 쾌히 상정에 임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서면으로 받고 법안에 관한 대체토론을 하라는 것은 정말 국회의 회의 관행상이나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

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 로 오히려 지나치게 빨리 하고자 했다가 아무런 내용도 우리가 논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일부 위원들은 숙지하고 계시고 지 난해 4개월 동안 참여하고 논의해서 알고 계시겠 지만,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저도 헌법개정특위 나 정개특위에서 활동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150건에 해당되는 법률안과 청원안에 대 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충분히 민주당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양해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사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 기 때문에 선거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논쟁적인 차원의, 논쟁적인 수준 의 대체토론은 아니더라도 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와 응답 정도는 있는 것이 오히려 법안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의사진 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泰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
- ○金成泰 위원 우리 자유한국당도 정말 30년 만 에 온 기회에 개헌해야 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

그러나 저도 헌법개헌특위로서 작년에 계속해 서 소위부터 모든 것을 다 챙겨 왔습니다마는 정 치 개혁에 관한 것은 또 별도의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개헌과 정치 개혁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사 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필 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의 합의도 없 이 갑자기 수십 개 안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인지 말 자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 는 분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재경 김관영 위원님.

○김관영 위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또 김성 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간사회의에 서 그간 논의되었던 정치개혁특위에서의 활동경 과를 전체적으로 보고받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질 의응답을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 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점심 때 3당 간사와 위원장님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또 국회에 회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을 오늘 일괄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하는 것까지도 합의했는데 이해가 서로 조금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하시는 데 전혀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윤관석입니다.

지난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어떻게 협의하셨는지는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합의가 됐으니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개특위에 넘어와 있는 법안 전체를 여기에서 대체토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헌특위나 새로 오신 분들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어떤 법안들을 논의했고, 실제로 18개는 특위 자체에서 의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질의 정도는 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법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정특위가 통합 특위로 되어 있어서 소위를 계속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개혁 관련 법안들의 내용은 심사할 때 소위에서 진행하고 나중에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하는 형식으로 해야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개특위가 진행됐던 경과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보고받으시고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심사나 대체토론 같은 경우는 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예.

○주광덕 위원 아까도 김관영 간사님 말씀을 들

었는데 지난 1차 회의 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4개월 동안 논의 했던 사항 그리고 쟁점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를 받자 특히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렇게 회의장에 와서, 오늘 오찬장에서까지 150여 건의 법안과 청원안이 상정된다 이런 것은 제가 합의 해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국회법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 의사일정에 이게 올라와 있지않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기 위해서국회법 해당 조문을 열거하면서 이의가 없냐고할 때 제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 150여 건의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을 오늘 대체토론을 다 한다 그것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전혀 동의해 주거나 협의 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른 위원님들은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특위를 전체회의 위주로 운영해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지만 헌법개정과 정개특위 소위로 각각 나뉜 그것 위주로 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게 이렇게 특위를 모아놓고 또 소위별로, 거기에 훨씬 더 중점을 두게 되면 이제는 그 해당 소위에 속하지 않는 위원들은 제 대로 검토해 볼 시간도 없고 언제 말 한 번 해 볼 수도 없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우리 법사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전체 해당되는 소관 부처에서 안건들이 잔뜩 올라오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들이 한 번은 이것을 다 일별할 수 있는 시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올라와서 다 소위로 넘어가니까 소위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 소위에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는 거고 그러면 또 나중에 소위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 어차피 다시 올라오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미 소위에 서 다 얘기한 거고 여야 격론이 있었는데 여야 합의된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냐?' 이렇 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헌법개정특위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이것을 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의사일정에 대 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힘들 게 모인 자리라고 하면 오늘도 얘기할 사람은 하 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일 을 정해서 거기에서 모자란, 더 이야기할 사람은 하고 그다음에 소위로 보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일종의 수정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 위원**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관 계는 지방선거 일정에 쫓기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이지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사 세 분이 상의 는 하시면서 보고는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 는 길이 아닌가 해서 보고는 보고대로 진행하되 보고가 끝난 뒤에 대체토론을 할 것인지의 여부 는 세 분의 간사님이 협의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광덕 위원 정회를 길게 하지 않고 10여 분 정도 해서……

○**박병석 위원** 정회는 하지 마시고요.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의견 타 당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6 · 13 지방선거에 필 요한 기초의원·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 수 조정에 관해서는 제가 출장을 포기해 가면서 1월 달에 가급적이면 매듭을 짓자라고 이인영 간 사님 그다음에 김관영 간사님한테 저도 흔쾌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우선적으 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서 2월 초에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3당 간사가 각별한 노력 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에, 아까 김진태 위원도 적절히 말씀하셨지만 저 희들이 정말 제대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실질적인 대체토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118명의 의원 들이 모두 이번에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 논의에 임하자 그래서 우리들도 타 이트하게 오늘도 개헌 정책 의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연찬회를 개헌 당내 논의를 위한 실 질적인 연찬회로 하고 있는 등 아주 적극적인 자 세를 가지고 있고, 이인영 간사님이나 김관영 간 사님께서 두어 번에 걸쳐서 논의할 때 느끼셨겠 지만 제가 아마 그 어느 때의 간사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있는 것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150건에 해당되는 법안과 청원 안에 대한 것은 저도 솔직히 지금 내용을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받자마자 제가 간 사로서 대체토론까지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보고 자체를 제가 개헌특위나 정개특위에 전혀 참석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간사로서 처음 부터 보고를 같이 받고 싶어서, 간사 간의 협의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여 분 정도면 충 분할 것 같습니다. 잠시 10여 분 정도만 정회해 주시면 바로 논의를 도출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10분 정도라면, 10분 정도로 해 서.....

○위원장 김재경 제 판단에도 아까 저희들이 모 여서 다 의논한 게 있기 때문에 교통 정리하는 데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 겠습니다.

>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사항을 정리하면 오늘 상정된 내 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전체적으로 받겠 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내용 중에서 6 · 13 선거와 관련 된 선거구 획정 그리고 의원정수와 관련된 부분 에 대해서만 오늘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에 회부 하고 나머지는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상태로 차후 에 토론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에 회부하는 안건하고 관련된 추가 안건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 치개혁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해서 병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7.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7.6.27~2017.12.31.) 에서 논의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

(15시45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정치 개혁특별위원회(2017.6.27~2017.12.31.)에서 논의 한 사항 관련 보고 및 향후 활동 논의를 상정합 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 6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존 정치개혁특위 활동경과 및 정치개혁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 동경과와 기 합의사항 그리고 정치 개혁 관련 주 요쟁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제 개편, 비례성 강화 등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 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기간은 2017년 6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위원님 그리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위원, 국민의당의 유성엽 위원 등 세 분이셨고, 여야 동수의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활동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심사를 위한 제1소위원회에 열두 분, 정당·정치 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 심사를 위한 제2소위 원회에 열두 분 이렇게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 였고, 소관 법안은 공직선거법 126건 등 총 186 건이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142건 상정하였고, 소 위에 81건이 상정되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개정의견 보고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 정당선거분과의 논의 경과를 보고받고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으며, 5차 회의인 2017년 12월 19일에는 1·2 소위원회에서 합의된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네 차례 회의가 있었으며 1차와 2차에서는 쟁점이 적은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셨고 3차·4차에서는 개헌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셨으며,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에서도 역시 네 차례의 회의를 열어서 지방선거 실무개정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거구 획정에 관한 행안부 보고를 듣는 등 심사를 하신 끝에 지방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등을 계속 심사하는 중에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개특위 기 합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에 있습니다만 먼저 간략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정개특위 1·2소 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통합하여 12월 19일 합의 의결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추천 순위·비율을 위반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무효로 하는 안과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거운동 자유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며, 현수막을 현재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완화하여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리사무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현재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선거일 전 120일전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하고 선거부정감시

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 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 정치 개혁 관련 주요 쟁점에 관 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공직선거 법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와 별표3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개 정하는 것입니다.

시 · 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역표는 시 · 도의원지 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치구 · 시 · 군 지역구 획정의 기 준이 되는 것이고, 법정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 으로 이는 2017년 12월 12일로 이미 도과되었습 니다.

다만 시 · 도의원과 자치구 · 시의원선거 예비후 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 일로 이를 올해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 계산하면 2018년 3월 2일이 됩니다. 따라서 3월 2일 전에 별표2와 별표3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 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안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정개특위 2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를 들었고, 3·4소위에 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현 행 제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의견이 대 립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비례성 강화와 관련된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 면 먼저 시·도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 입을 위해서 천정배 의원·유성엽 의원·이용호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선거구당 선출 인원 확대를 위한 천정배 의 원·심상정 의원·유성엽 의원안이 있습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보시는 표에서 참조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중에 세종시와 제주도에 지방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할 수 있다 라는 입장에 따라서 세종시법과 제주도법을 제출 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

표제 도입을 위해서 이해찬 · 심상정 · 오세정 의 원안이 발의되어 있고,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심상정・위성 곤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별 주요 내용 역시 보시는 표에서와 같습 니다.

다음, 7페이지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러한 선거 구 획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속절차 를 고려할 때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준수를 위해서 획정안을 적어도 2월 7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운영 일정에 따르면 2월 20일 본회의에서 일단 안건 처리 계획이 있으므 로 이 시점에 획정안을 처리할 경우에 자치구・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순연이 불 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주요 안 건이었던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되 어 있는데 소병훈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주현ㆍ심 상정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안별 주요 차 이점은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작성할 것 인지 권역별로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의원 총정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등 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의 차이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안건으로 국회의원선거 중 · 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김학용 의원안이 발 의되어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안에서는 의원정수 를 200인으로 축소하고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에 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2명 이상 4명 이 하로 하는 중 ·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안 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 입하는 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노회찬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 이렇게 2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 위 및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67조와 관련된 사안인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인지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인지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으나 학계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개특위 소관은 아니고 현재 행 안위 소관입니다만 개헌과 관련되어서 보고드리 면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 다.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은 재외국민투표와 선상투표·사전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투표운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부개정법률안 2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이 지금 발의되어 있으며, 아울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 3건과 법률용어 순화 및 법정형 정비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이 행안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안 7건이 행안위에 회부되어 있지만 이를 정개소위에서 논의하기위해서는 소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정치개혁소위 주요 쟁점 법안 목록 등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 보고사항 중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구제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우리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발언 순서는 없으나 발언을 원하는 위원 님 계시면 손을 드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나요?

○최인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은 대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에 관한 사항이 상당 히 중요하고 긴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칫하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거나 만약

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법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하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14조 1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투표권자로 국민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있을 국민투표가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하면 무효가 될 수있다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년여 이상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시급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과연 국회가 법도 정비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하느냐, 그렇게 상당히 비난받을 소지가 크고, 개헌 의사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안위로 돼 있는데 행안위보다는 우리 본 특위로, 헌정특위 로 이것을 이관받아서 심사하고 또 처리하는 것 이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만약 에 행안위에서 계속해야 된다면 최소한 관련 위 원회의 자격을 얻어서 본 헌정특위가 공식적인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헌정특위 위원들의 의견들을 모으셔서 행안위와 또 국회의장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인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본 바 있 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죽 들은 다음에 간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민투표법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

는데 이것도 선후, 주종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아무리 이게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서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 게 인정할 것인지는 또 입법사항으로 결국은 돌 아갑니다.

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거꾸로 헌 법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것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자칫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이 재외국민의 투표가 어느새부터인가 이렇 게 인정이 돼 왔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남아 있습 니다. 과연 대한민국 내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그만 큼 그에 따르는 의무는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누 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 다.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길은 열려 있지 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 부분일 정도로 또 어떤 형평성이나 그 권리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등이 굉장히 큰 그런 점 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는 그런저런 문제점도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고 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명칭부터가 이 해하기 어렵고,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눈여겨보면 여러 의원들 안이 나 와 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총 정수를 늘리는 안 이 지금 여러 개가 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국 민들이 허용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 니다.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박수를 받 으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 을 발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의석수를 늘린다? 글쎄요,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것에 동의하기 어 렵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석의 총 정 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 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 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 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 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 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 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 혈안 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서 이런 의원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 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충분 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기일을 더 요구하면서까지 대체토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런 겁니다.

오늘 상정했던 이 많은 법안 중에 공무원의 정 치 참여를 인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51항, 120항, 121항 이런 건데요.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 너무 신분 제약 이런 것 두 지 말고 다 하자 이런 건데요. 법관도 정당을 가 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판사가 민주당 정당을 가지고, 정의당 정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법관에게 재판받기 싫습니 다. 정의당 소속 법관에게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되면 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의 그 독립이 정치적인 독립에서 비롯됐다는 것 또 그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 심이라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양심이 아니고 직업적인 객관적인 양심이라는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가치와 엄청나게 이것은 상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의견 밝히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 해 서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이것 문제다라고 생 각했는데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보면 교육감선거 연령은 16세로 또 선거운동을, 지금은 미성년자 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올라온 법들 에 의하면 아예 그 제한을 철폐해서 아무나 나와 서 애들도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한테 전부 선거를 하자고 하면…… 교육이니까, 그러면 교 육이 중요해서라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다 선거 하도록 하지요? 그냥 애들을 전부 선거판에 끌어 들여 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선거운동원 으로, 자원봉사자로 부려 먹을 생각입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소위에서도 논의할 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 제대로 좀 논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현행 공직선거 규칙 4 조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인구와 읍면동 비 율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 ○김경협 위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의 선 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와 읍면동을 고려해서 기 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 파악 을 해 봤더니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광역시·도가 인구 플러스 읍면동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15년부터 정부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책임읍면동제(대동제), 광역동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 부분 은 제가 미처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경협 위원 그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이것 은 행정안전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 가 안 갑니다.

○김경협 위원 아마 지금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읍면동 수를 통폐합해서 광역동화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추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책임읍면동제, 그러니까 동을 통합하는 전 단계의 대동제(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가 부천, 남양주, 의정부, 그리고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가 세종시, 시흥, 군포, 원주, 경기도 광주, 경주시 이렇

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리성을 제고하기위해서 읍면동을 통폐합하고 광역동화하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문제는 기초의원 정수를 고려할 때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기초의원들이 광역동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 개혁이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읍면동을 더 쪼개서 기초의 원 정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행정 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이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규칙 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김경협 위원 정말로 이게 심각한 게 지금의행정 개혁 방향과 다른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는 물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앞으로 이게 확대가 돼 나갈 겁니다.

계산을 좀 해 봤더니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하나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대동제를 추진하면서 동 수가 36개에서 10개로 줄어들 경우에, 지금 계획이 그것인데요, 기초의원 수가 28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위원님, 그런데 2 내지 4인을 선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요
-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런데 기초의원 정수를 이렇게 정하도록 지금 현재 규칙에 돼 있어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렇습니까?
- ○**김경협 위원**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게 돼 있는 데요.

현재 9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대동제 시행이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읍면동 수를 고려하는 정수 제도 때문에 행정 개혁이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렵고 오히려읍면동 수를 기초의원들은 다 늘려 가려고 합니다, 쪼개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행정

안전부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공직선거법 선 거연령이 19세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수준 향상, 언론 · 통신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서 정치 · 사회 의 민주화 등을 고려할 때 18세에 도달한 경우에 는 선거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지금 민법상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그다음에 입대, 운전면허 취득,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거 든요. 18세면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 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 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만 19세입니다. 나머지 33개 국가는 18세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 18세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우리 대학생 들 중에서 거의, 대학교 1학년의 절반 정도는 만 18세, 19세가 안 된 상태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 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학교 1학년도 절반 정도는 선거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따라서 만 18세면 후보자의 자질과 그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 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 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 견해는 어떻 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중앙선관 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OECD 국가라든가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18세로 제안했습니다 만 또 일각에서는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 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상 당한 논의와 또 보완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우리 헌정특위에서 이 문 제도 충분히 논의해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 함께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 저도……

○위원장 김재경 예, 순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기억을 했다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대체토론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당장 시급하게 2월 7일 안으로 개정돼야 할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논의에 집 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간사님들의 합의 내용 취지에 맞춰서 지방 의회 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17년 12월 5일 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 차 소위에 행정안전부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안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비공 개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행정안전 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총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 면 안 되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런데 그것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 회는 시·도지사 관할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 도지사한테……

○**황영철 위원** 당장 광역의원 선거구, 광역의회 선거구 관련돼서는 오늘 우리 헌정특위에서 논의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께서 좀 파악을 하시고 선관위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소 관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획정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듯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별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포함 시켜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 던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총장님한테서 그 답변이 좀 나왔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죄송합니 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결국은 이것도 소위에서 행안부 조정안을 다시 보고받는 형태로 해야 되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선거 구 조정과 관련돼서 제가 늘 국회의원 선거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의회 선거구도 도농 간의불균형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도의회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시·도의회 정원을 고정시킨 채 선거구획정이 들어가게 되면 시도에서도 역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분명히 목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지방에 해당되는 전라 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등등에 있어서 총 정원 수가 증원되지 않는 한 결국은 도시지역 의 도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도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도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소위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님이나 간사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충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속하게, 간사님들께서 2월 7일 날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예상컨대 2월 7일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다른 사항들, 어떻게보면 총체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또 지방의원 선거구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현행 제도 안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제도 안에서도 역시 의원정수를 고집하거나 경직되게 생각해서 오히려 농촌지역의, 지방 농촌지역의 지방의원 수가 줄어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성격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헌법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함께 합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는 선거구제의 개편과 함께 정부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조화 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선거구제 개편 역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정부 형 태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그 렇게 톱니를 맞추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근본적인 동인이 어디서 왔느냐? 계속 반복되는 비극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전체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우리 개헌특위에서, 개정특위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개헌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선거구 제 개편 자체가 예를 들면 정부 형태와 모순되는 선거구제 개편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특위로 이관된 법안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자 하는 총 4개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소수정당의 출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모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당제 경향을 가져오는 선거제도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적절한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 원칙과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당제보다는 양당제 경향이 대통령제와 부합하고 적합할 겁니다.

또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권역별 연동제, 중·대선거구제 등 이런 것들은 개헌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헌법개정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라 서 논의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한 만큼 이제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왕 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 헌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장님께서도 특위 운 영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제 가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한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잠깐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 봤는데 물론 첫 회의라서, 본 발언으로는 첫 발언이라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 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모르는 것 공부하고 해서 이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 걸 통합위원회로 구성하게 된 데는 그에 따른 취 지나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이 되나 이 두 가지의 별개 위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소위가 구성된 거니까 앞으로 간사님들과 위원장이 의논하셔서 실질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제 의견에는 소위 중심의 위원회 운영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관련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관련된 법 안 처리도 상당히 급하기는 한데요, 국민투표법 도 우리가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을 하지 않아 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 습니다. 우리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입니다. 헌법 정신에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됩니다. 이 국민투 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 니고 우리가 대의 권력과 집행 권력에 국민주권 을 위임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 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결정권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게 국민투표고 국민의 대통령선거고 국 회의원선거고 지방자치의회에 대한 선거입니다.

이 직접결정권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건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100% 위헌 판결 이 납니다. 국민투표 성립이 불가능해요. 우리 헌 법에 규정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방향이 물 론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의견 을 얘기할 수 있지만 헌법개정특위가 헌법정신의 원칙 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야지요. 헌 법정신을 훼손하거나 흔드는 그런 수준에서 논의 가 전개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원회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김진태 위원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는 세계 각국 선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중 의 하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모 르시는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 되셨다면 저는 더 공부를 빨리 해서 보충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충수업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저는 우리 헌정특위가 이렇게 심한 말이 오가는 줄 몰랐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지방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여야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지방의회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남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이 지방 의석의 90%를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이 과연 실현되겠느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우리 헌정특위에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서 4 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갤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양당이 독소조항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해서 사실상 4인 선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쪼 개기를 가능케 했던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은 폐 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당 공천만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는 기초의원의 2인 선거구 이것을 저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맞게 3인~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선거법을, 지방의회 의원 선출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때 취지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독소조항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이번 헌정특위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정태옥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 ○김진태 위원 신상발언……
- ○**위원장 김재경** 김진태 위원님이 신상발언이십 니까?

발언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특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우리가 사실상 첫 회의라서 중요한 순간인데요. 제 발언하고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앞에 앉아 계신 다른 당 소속 위원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마음에 들고 그렇게 흡족하면 뭐 하러 이런 특위를 하겠습니까? 의사가 전부 다 같으면 그대로 바로 본회의장으로 달려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이 것은 회의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상대방 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거나 여기서 교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앞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이인영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첫 회의에서부터 무슨 '공부를 더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어떻습니까, 이 것은 좀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당, 특히 여당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 떤 위원인 것을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질 과 품성에 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일일이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기본 품성을 가지고 먼 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 사실관계를 자꾸 왜곡을 하는 겁 니다, 왜곡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말을 안 할 수 가 없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제가 마치 무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 기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 ○김경협 위원 내가?
- ○김상희 위원 김종민 위원……
- ○김진태 위원 김종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여러 분들이 이렇게들 지적을 하니까 제가 좀 착각을 한모양인데, 그러면 김종민 위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 내렸는데 끝까지 개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개정을 하는 그 입법의 재량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기한을 그렇게 정하지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전

세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무슨 연동형 비 례대표제 이것에 대해서 혼자만 이해가 부족하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파 악한 바로는 전 세계 정치 선진국 중에서 특히 독일과 뉴질랜드 딱 2개국 외에는 이 제도는 도 입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논 의를 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 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 니다.

다음, 정태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 는데, 하시겠습니까?

○정태옥 위원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 동료 위원 인 김진태 위원 발언 내용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본인이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해서, 세계 가 다 사용하는 이걸 모른다 하니까 선관위 과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되 는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 생소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거리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연 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 습니까?

그리고 그 말한 취지도, 김진태 위원의 발언 취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실제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으로 잘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 서 '선관위 과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 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 정개특위가 어떻게 운 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넘어가 실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본인의 사 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 까?

○위원장 김재경 분위기들은 충분히 전달이 되 었을 겁니다.

- **○심상정 위원** 예?
- ○**위원장 김재경** 심상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어 요?
- ○심상정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재경** 이 정도 하시지요?
-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발언권 주세요.
- ○위원장 김재경 고민스러운데요. 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품성에 대 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 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난 19대 때 저 는 이걸 위해서 4개월 동안 농성도 한 사람입니 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국민들이 모른…… 그래서 우리 국 회의원들이 모르는데 국민들이 아는 것은 더 어 럽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안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받고 이걸 앞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이 안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렇 게 하면 그건 논의를 봉쇄하는 것이라는 판단하 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선거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중 앙선관위원회를 불러서 중앙선관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개특위를 매 회마다 해 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뭐 잘못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이걸 다 채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중의 기본 모델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정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헌특위에서 그동 안에 활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도 접해 보 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모르 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논의 가치조차 없다 이런 식의 논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제 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 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간사입니다.

정말 대선 기간이나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파를 넘어서 일정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뢰하고 또 때로는 소수의견이라고 그래도 경청할 만한 일이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가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인정을해 왔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인데, 아까 첫 번째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고 동료 위원에 대해서도를 넘는 발언이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적당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간사 입장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자제했는데 방금 신상발언과 정태옥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발언을 듣고는 제가 상당히 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김진태 위원의 발언 취지는 국민들이, 유권자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소하고 아직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와 국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강조하는 어법의 하나로 '나도 잘모르는데'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그런 점은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서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워딩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명하시는 것은 좀 정직하지 못한 해명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은 솔직히 하시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헌정특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심상정 위원의 지도자적인 스탠스였는데 방금 해명은 저는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 충분히, 표현 방법상 어떤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는 이 분야에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도잘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어법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표현 하나가지고 동료 위원을 이렇게 저격하는 듯한 그런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은 저는 분명히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해명이 좀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그런 해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상정 위원께서 큰

지도자답게 유감 표명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 정도 하시지요. 서로 간의 속마음들은 아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실무적인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보통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시의원을 한 두 사람 뽑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시의원 선거구 안에서 구 의원들을 몇 사람 뽑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국민들의 상식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 습니다.

O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식에 입각하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가 같다든가 시 의원 선거구와 구의원 선거구가 같다든가 이런 것은 좀 이상한 선거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요.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의원 선거 구하고 구의원 선거구를 함께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온단 말이지요. 3인 선거구하고 4인 선거 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의원이라는 것은 각 동을 대표해서 동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문제 또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이러한 것을 적절히 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강남 같으면 강남구의 구정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정치이고 또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의원 선거구하고 구의원 선거구를 같이 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정당 보고 한 표씩 찍는 그런 선거밖에 더 되느냐, 누가 자기 동을 대표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선거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물론 여기 시·도지 사들이 구의원…… 시도의 의회 획정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 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도에 의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 니다. 그래서 사표를 방지한다든가 또 소수자의 정계 진출을 위해서 아마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 거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 세분화됨으로써, 또 본래 추구 하던 목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이 런 부분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돌아가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의 원 선거구하고 구의원 선거구를 몽땅 이렇게 같 이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절대 잘라 야 된다. 그러니까 시의원 선거구를 적어도 2개 로 하는 구의원 선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법 으로 정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4인 선거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소수당을 보호하는 차원이 라든지 그것도 좋은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구의 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물론 정당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별개 의 문제이고.

정당 공천 없이 소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 면, 정당 공천이 있다고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하 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선거구제를 하더라도 최소 한 시의원 선거구하고 구의원 선거구가 함께 하 는 선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려면 뭐 때문 에 주민자치를 합니까?

그리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시의원이 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그게 선거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전부 돈 선거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읍면 선거도 마찬가지이 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써 보고 정의롭게 그렇게 선 거구 획정의 안을 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달 말까지 안을 내시라고요, 이달 말까지.

○위원장 김재경 이종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헌법 개정하고 정치 개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각 위원님들 또 소속 정당의 가치와 비전, 소신 이런 부분이 충돌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국민들 이 보실 적에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명색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 는 이 위원회 성격에 맞는 품격을 지켜 가면서 이 위원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 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두 가지 여 쭤보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한 20여년 만에 다시 실 질적인 다당제가 실현이 돼서 사실 국회에도 많 은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 우려했던 양당의 밀 실 담합 정치라든가 또 어떤 힘의 밀어붙이기 정 치 또 청와대의 어떤 일방주의 이런 부분이 통용 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국회가 공전되는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됐지요. 그렇게 해서 사실 국회의 정치 문화가 많이 개혁되고 긍정적으로 가는 측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를 본다면 이번 지방선 거는…… 지방자치 행정은 결국 지방분권인데요. 그것이 중앙과 지방으로 권력을 나누는 건데 정 말 지방 권력이야말로 분권을 실현해야지만 진정 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지방 권력은 사 실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지배하는 그 경향성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지방 분권의 어떤 취지, 정신에 정면으로 저는 위배된 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 권력이야말로 정말 다당제가 제대로 실현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무총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글쎄, 원 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들이 충족이 되려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될 것 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려면 지

방의원 정수도 또 같이 확대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일 의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정치 실험의 또한 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향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 부분을 어떻게 이것이 꼭 옳다 그르다, 선거구제에 관한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일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O이태규 위원 제가 지금 총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제도에 앞서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방 권력이 특정 정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이 지방 분권의 참뜻과 부합하다고 보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 부분 이 해소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례대 표······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잘못됐 다고는 보시는 거지요, 이 지방 권력이 특정 정 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것은 지난번 정개특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기초의원선거에 대한 어떤 개편 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기초의회 선거구의 선거권역을 광역의원선거와 같이 해 가지고, 이게 2인 이상 4명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2인 선거구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이 부분을 적어도 3인 이상 5인이하 이렇게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도······

○이태규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한국 정치, 한국 선거문화의 어떤 행태나문화 또 현실 그것이 또 민의를 담아내는 정치개혁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가장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견해가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답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다 끝나셨지요?
- ○안상수 위원 한 말씀만, 짧게……
- ○**위원장 김재경**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김상희 위원 지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들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정치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초의 경우에 삼사십 명의 기초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구 아주 소단위, 인구가 적은 데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의회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의원정수의 10%가 현재 비례 대표인데 전체 의원정수의 30 내지 50%를 비례 대표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30% 내지 50%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기초의원의 지역 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이 법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15인이면 15인, 아주 소수의 기초의원들이 있는 그런 의회의 경우와 15인 내지 한 40인까지의 기초의회하고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기초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오 히려 전체를 다 비례로 뽑아서 정당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중·대선거구하고는 다 른 거지요. 중·대선거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결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례를 늘리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15인 미만이나 작은 의회의 경 우에는 전체를 비례로 뽑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비례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시군구 선출 인원을 더 확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정수를 하고 선출 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선관위에 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고요. 상당히 복잡한 경 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정치 현실 상 지역대표와 유권자 간의 유대관계 그런 부분 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입법화되기에는 많은 논의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작은 시군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그렇 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동별로 의원 들을 배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특히 도시의 구 같은 경우 보면…… 구는 좀 인구가 많으니까 다르겠지만 오히려 소지역주의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 고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선관위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선관위에서 빠른 시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예.

○위원장 김재경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다음, 안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우리 모두 알다시피 개헌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촉발된 것은 국정농단 이후에 제 왕적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사실은 18 대 ·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위원 회를 두어 가지고도 연구를 시키는 등 그동안에 도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나 최근에 급격하게 되 어서 이게 다시 지난 20대 때 특별위원회가 있었 고, 이번에 이것을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같 이 해서 효율적으로 한 것은 아주 대단히 잘된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죽 여론조사라는 것을 해 보면 국회의원들도 3분의 2 이상이 개헌을 늘 찬성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헌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각론에 가서 다 무산 이 됐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권력 구조에 관해서 그동안에 죽 야당, 지금의 여당의 지도자들이 멘 트한 내용들로 보면 다들 권력 분산형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즉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되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한 내용들이 다 있 지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 대통령 을 개인적으로 원한다'이래 놓으니까 또 민주당 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 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역시 제 왕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상황에 서,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가운데 역시 개 헌에 관해서는 논의될 게 굉장히 많고 아주 심층 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반면에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경우에 정치…… 사실 이 부분도 선거 때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 혁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됐었고 결국은 큰 변 화 없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권 력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 구조가 개편이 된다면 선거구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많다 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개특위에서는 논의될 양 과 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 위원회로 하기로는 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오히 려 정개특위의 소위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무엇무 엇을 논의하도록 위임해 주고 전체회의에서 개헌 을 포함한 많은 내용들이 연계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나중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 겸해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47항 및 87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마치고 정치개혁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인 3월 2일인 점을 감안해서 관련 법률안이 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 6월 13일로예정된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는 조속히 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해서 기존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관해서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님과 선관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 경 협 김 관 영 김 상 희 金成泰 김 재 경 김 종 민 김 진 태 박 병 석 박 주 민 심 상 정 안 상 수 윤 관 석 이태규 이 인 영 이종구 정 태 옥 주 광 덕 최 인 호 황 영 철

○청가 위원(2인)

박완주 정춘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공 식 하 문 전 위 정 연 원 호 전 문 위 원 정 성 회 입 법 심 의 관 장 지 원 입 법 심 의 관 최 선 옂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김 대 년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6. 5. 30. 윤후덕·백재현·원혜영·박남춘· 김경협·김성찬·김민기·설훈·노웅래· 안규백·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6. 5. 30. 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 황영철·권성동·이장우·이우현·홍문종· 홍철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관영·이동섭·유성엽·김경진· 정동영·이상돈·최경환(국)·이찬열·오제세· 박준영·장병완·장정숙·박주선·채이배· 김삼화·박주현·이용호·주승용·김병관· 김광수·이종걸·황주홍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병관· 김삼화·박주선·박주현·박준영·오제세· 유성엽·이동섭·이상돈·이용호·이종걸· 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동영·주승용· 채이배·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 이학영·김철민·윤후덕·이철희·서영교· 이해찬·박남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8. 김태년·박광온·박경미·설훈· 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김철민· 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8. 김태년·박주선·박광온·박경미· 설훈·이학영·윤후덕·서영교·박남춘· 김철민·이해찬·이철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6. 7. 4. 조정식·최도자·홍의락·한정애· 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 윤후덕·서형수·박남춘·신동근·박재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6. 7. 5. 채이배·김종회·정인화·최경환국)· 최도자 · 손금주 · 김광수 · 이용주 · 조배숙 · 김경진 · 김동철 · 박주현 · 유성엽 · 주승용 · 김관영 · 이용호 · 신용현 · 박준영 · 장정숙 · 이동섭 · 송기석 · 장병완 · 오세정 · 김삼화 · 권은희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6. 7. 5. 김학용·김규환·권석창·안상수· 김용태 · 김무성 · 김종석 · 전희경 · 경대수 · 유의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3. 윤호중·문미옥·김병관·김영주· 원혜영·최인호·백재현·안규백·권칠승· 신경민·박남춘·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2. 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 김종회 · 임종성 · 윤후덕 · 전해철 · 김해영 · 유은혜·전재수·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6. 소병훈·채이배·윤종오·최경환(국)· 정인화 · 문미옥 · 박광온 · 황희 · 김종대 · 남인순 · 박경미 · 유승희 · 윤후덕 · 유은혜 · 김종훈 · 임종성 · 백재현 · 신창현 · 강창일 · 김정우 · 박남춘 · 위성곤 · 김광수 · 김해영 · 이훈 · 김영춘 · 강병원 · 유성엽 · 정동영 · 인재근·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6. 7. 27. 소병훈·강창일·윤관석·박경미· 전재수 · 원혜영 · 임종성 · 인재근 · 김영진 · 황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함진규·이헌승·박맹우·박덕흠· 김성태 · 홍문표 · 김광림 · 이우현 · 김기선 · 성일종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 이채익 · 권석창 · 김명연 · 정태옥 · 배덕광 · 민경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8. 3. 유승희・김종훈・추혜선・유은혜・ 김해영 · 권미혁 · 유종오 · 박경미 · 송옥주 · 한정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8. 4. 박주민·유은혜·김병관·채이배· 어기구 ·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손혜원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세 · 이철희 · 서영교 · 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6. 8. 4. 박주민·김병관·어기구·김해 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 세 · 이해찬 · 이철희 · 양승조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6. 8. 4. 박주민·김병관·채이배·어기구· 김해영 · 제윤경 · 이재정 · 송옥주 · 이언주 · 오제세 · 이해찬 · 이철희 · 전혜숙 · 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 발의)

(2016. 8. 5. 김기선·박덕흠·윤소하·김성태· 김세연・김삼화・김상훈・이명수・이만희・ 김도읍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

(2016. 8. 5. 김병관·홍익표·황희·박재호· 윤관석 · 문미옥 · 김해영 · 김태년 · 제윤경 · 추미애·이원욱·김영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2. 김상희·이학영·전현희·남인순· 윤호중 · 이춘석 · 김영진 · 김해영 · 양승조 · 기동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2. 유승희·신창현·제윤경·김해영· 박주민 · 박남춘 · 유은혜 · 소병훈 · 김종훈 · 송옥주·기동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6. 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 정재호 · 박광온 · 김병관 · 추미애 · 권칠승 · 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전해철·윤후덕·이원욱·황희· 정재호·박광온·김병관·추미애·권칠승· 김철민·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이언주·이훈·송기석·윤후덕· 이개호·송옥주·이춘석·김철민·백재현· 윤관석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9. 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 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성수·박정· 권미혁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8. 19. 박홍근·김해영·박광온·정재호· 문미옥·이춘석·김정우·박경미·김성수· 박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8. 26. 유승희·이원욱·손금주·이동섭· 조배숙·전현희·기동민·설훈·이개호· 윤관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8. 29. 백재현·어기구·김해영·안규백· 박정·김성수·전혜숙·김정우·변재일· 서영교·노웅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9. 2. 유승희·권미혁·정춘숙·서영교· 김삼화·인재근·진선미·설훈·박주민· 송옥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6. 9. 6. 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동영·양승조· 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6. 9. 6. 윤소하·권미혁·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동영·손혜원· 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9. 19. 박주민·권미혁·황주홍·김경진· 박홍근·손혜원·박남춘·신창현·남인순· 정춘숙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6. 9. 29. 김성태·김용태·김승희·임이자· 김종석·金成泰·이은권·유재중·김규환· 유민봉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17. 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 손혜원·송기헌·신창현·오제세·윤관석· 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24. 박주현·김두관·김종민·김현미· 박광온·박정·박준영·이언주·정동영· 천정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24. 이원욱·민병두·최명길·위성곤· 김정우·전해철·유동수·고용진·김상희· 유은혜·강창일·황주홍·박재호·박홍근· 이학영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이원욱·박홍근·민병두·위성곤·황주홍·김정우·강창일·최명길·박재호·유동수·전해철·김상희·유은혜·고용진·이학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6. 10. 25. 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 백재현·소병훈·김영호·김영진· 김정우·표창원·진선미·박남춘·최경환(국)· 이재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2. 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 윤소하·추혜선·정성호·김경진·어기구· 김종회·이찬열·김종훈·위성곤·표창원· 신창현 · 김정우 · 황주홍 · 정동영 · 전해철 · 서영교·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3. 진선미·박경미·안규백·박홍근· 윤소하 · 추혜선 · 정성호 · 김경진 · 채이배 · 어기구 · 김종회 · 이찬열 · 김종훈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김정우 · 황주홍 · 정동영 · 전해철 · 서영교 · 박남춘 · 임종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3. 박남춘·서영교·윤관석·이재정· 홍영표 · 손혜원 · 강병원 · 전해철 · 이찬열 · 김영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4. 진선미·추혜선·이정미·정성호· 조배숙 · 김종훈 · 김종회 · 신창현 · 김정우 · 백혜련·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9. 이진복·김성태·이현재·김종석· 김성원・한선교・김선동・정우택・조훈현・ 권석창 · 심재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1. 우원식・이찬열・김경수・홍익표・ 박재호 · 박찬대 · 김정우 · 윤후덕 · 이훈 · 박정·송옥주·송기헌·채이배·어기구· 신창현 · 김병관 · 박남춘 · 소병훈 · 이정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4. 원혜영·이찬열·김정우·조승래· 설훈 · 이해찬 · 손혜원 · 황주홍 · 지상욱 · 송옥주·전현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4. 이용호·김경진·권은희·오세정· 장정숙 · 박주현 · 채이배 · 김종회 · 주승용 · 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8. 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 추혜선 · 노회찬 · 권미혁 · 김종훈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18. 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박재호·전희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6. 11. 21. 김세연·유승희·배덕광·윤소하·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이혜훈 · 박용진 · 원혜영 · 박덕흠 · 이태규 · 강병원 · 이철희 · 박범계·박재호·전희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6. 김해영·윤호중·이동섭·김민기· 이찬열 · 신경민 · 윤종오 · 우원식 · 권칠승 · 박광온·전재수·박홍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7. 김경수·강창일·김영춘·김정우· 김종훈 · 김현권 · 민홍철 · 박남춘 · 박재호 · 박주민 · 서영교 · 서형수 · 소병훈 · 송옥주 · 유소하·이원욱·이정미·표창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16. 서청원·김성원·김순례·민경욱· 박덕흠 · 박순자 · 송희경 · 원유철 · 이우현 · 이현재·정갑윤·조원진·지상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21. 김중로・황주홍・장정숙・신용현・ 김병기 · 이동섭 · 정인화 · 이태규 · 김삼화 · 최도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29. 노회찬·추혜선·김종대·이정미· 윤소하・김종훈・심상정・이종걸・윤종오・ 이철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7. 1. 6. 채이배·이태규·조배숙·안철수· 김경진 · 김동철 · 박선숙 · 이용주 · 박준영 · 최경환(국) · 김종훈 · 추혜선 · 윤소하 · 양승 조 · 서영교 · 김삼화 · 오세정 · 신용현 · 권은 회·주승용·이동섭·박주선·장병완·김성 식·김수민·손금주·송기석·김중로·윤영 일·김관영·최도자·김종회·장정숙·정동 영·박지원·유성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1. 9. 박남춘·정재호·소병훈·진선미· 손혜원·표창원·김정우·박찬대·김영진· 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7. 1. 23. 송영길·정성호·박정·신창현· 황주홍·황희·서영교·박남춘·박주민·소 병훈·전해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7. 1. 26. 김태년·박광온·이개호·전재수· 이학영·박홍근·설훈·안민석·박경미·김 상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김정우·박찬대·이철희·문미옥· 강창일·위성곤·안민석·김병기·송옥주· 최인호·박광온·최운열·유동수·권미혁· 박남춘·김영호·조승래·이춘석·김상희· 유은혜·신창현·표창원·전현희·이재정· 설훈·윤후덕·안호영·김현권·김철민·제 윤경·고용진·김병욱·강병원·박경미·김 종민·우원식·전해철·정재호·소병훈·백 혜련·김영진·김병관·박완주·임종성·기 동민·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2. 6. 황영철·권성동·정양석·정운천· 오신환·이군현·이학재·김성태·하태경· 김현아·홍철호·김세연·박인숙·이진복· 강길부·홍일표·여상규·김재경·이종구· 김학용·정병국·장제원·박성중·김무성· 김영우·홍문표·주호영·김용태·유승민· 유의동·이혜훈·이은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 진선미·정춘숙·서영교·신용현·한정애· 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남인순·김삼화·전혜숙·박주민· 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신용현· 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남인순·김삼화·김상희·전혜숙· 박주민·진선미·정춘숙·장정숙·서영교· 신용현·한정애·이정미·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0. 김성원·곽상도·권석창·김도읍· 김명연·김정재·김현아·윤상현·이양수· 조훈현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7. 2. 10. 이은재·강석호·이명수·정운천· 홍문표·김성태·김현아·장제원·박성중· 김학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3. 김학용·오신환·장제원·박인숙· 정운천·김성태·이진복·하태경·강길부· 주호영·정성호·노웅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4. 김상희·원혜영·유승희·이용득· 김두관·박주민·제윤경·강병원·유동수· 설훈·김철민·최운열·김병기·박광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2. 15. 박주민·권미혁·설훈·김영호· 김상희·김두관·제윤경·이용득·강병원· 김병기·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 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 김수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3. 2.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 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안민석· 김수민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 김수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3. 8. 장정숙·김중로·전혜숙·김정우· 이동섭・김경진・홍영표・조배숙・이용호・ 천정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권칠승·김병관·이원욱·황희· 박홍근 · 박재호 · 박광온 · 김해영 · 정재호 · 설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3. 16. 진선미·서영교·백재현·김경진· 박용진 · 김종민 · 박홍근 · 박정 · 김철민 · 박 남춘 · 금태섭 · 유동수 · 김수민 · 표창원 · 손 혜원 · 김성수 · 유승희 · 김영춘 · 조정식 · 양 승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3. 17. 정인화 · 윤영일 · 홍문표 · 이동섭 · 김관영·조배숙·박준영·김종회·황주홍· 유성엽·김중로·김영춘·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4. 3. 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 정유섭 · 김성원 · 전희경 · 염동열 · 권석창 · 이명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 강창일 · 서영교 · 소병훈 · 김정우 · 박찬대 · 강병원 · 윤관석 · 박주민 · 윤소하 · 유승희 · 이재정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7. 4. 5. 신보라·김선동·이현재·하태경· 김성원・김성찬・함진규・이종배・조경태・ 정갑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4. 7. 이재정·김영진·진선미·김정우· 소병훈·박남춘·백재현·표창원·김영호· 금태섭 · 양승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철· 주호영 · 이은재 · 하태경 · 지상욱 · 정양석 · 김영우 · 박인숙 · 김학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1. 윤종오·김성수·이용득·서영교· 김종훈・유은혜・박홍근・고용진・김수민・ 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1. 유동수·조승래·백혜련·김병욱· 소병훈 · 신창현 · 박영선 · 어기구 · 강병원 · 최운열·안호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4. 김학용·홍문표·주호영·김무성· 이종구・유승민・하태경・정운천・정병국・ 홍철호 · 황영철 · 정양석 · 여상규 · 김성태 · 김재경 · 이학재 · 오신환 · 김영우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소병훈·유승희·박정·인재근· 김철민 · 김상희 · 이재정 · 김정우 · 표창원 · 진선미ㆍ김영진ㆍ박남춘ㆍ김영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7. 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진· 이태규 · 김종회 · 김삼화 · 오세정 · 천정배 · 김관영 · 박선숙 · 최도자 · 윤영일 · 박준영 의 워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8. 송옥주·표창원·노웅래·김영호· 박정 · 김상희 · 원혜영 · 위성곤 · 이철희 · 이 원욱·심기준·박주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8. 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8. 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 김상희 · 민병두 · 이재정 · 이철희 · 원혜영 · 조승래 · 위성곤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 이원욱·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 위성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5. 8. 기동민·이철희·조승래·김영호· 권미혁·전혜숙·유동수·강창일·우원식· 전재수·어기구·강훈식·문미옥·강병원· 제윤경·박경미·이용득·백재현·박찬대· 설훈·유은혜·안호영·김철민·송영길·김 경수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함진규·박덕흠·이은재·이철우· 김기선·염동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 강석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5. 17. 신동근·전재수·박남춘·신창현· 송옥주·노웅래·박홍근·안민석·소병훈· 조승래·설훈·이용득·이해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5. 18. 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박영선·윤관석·김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2017. 5. 31. 유은혜·김병욱·노웅래·조승래· 인재근·정성호·위성곤·윤관석·윤종오· 박홍근·송기헌·신창현·박정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

(2017. 5. 31. 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 윤소하·심상정·이원욱·김세연·김현아· 윤종오·조배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 주승용·정동영·장정숙·김경진· 정인화·황주홍·노웅래·김관영·이용호· 윤영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 유승희·강훈식·고용진·김경협· 김병욱·김상희·김영주·김영춘·김철민· 김한정·문미옥·박정·백혜련·설훈·소병 훈·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위성 곤·유동수·이개호·이원욱·전현희·조승 대·최운열·최인호·표창원·송기헌·진 영·김병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7. 유승희·강훈식·고용진·노웅래· 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주· 김영춘·김철민·김한정·문미옥·박정·백 혜련·설훈·소병훈·신창현·심기준·심재 권·어기구·위성곤·유동수·이개호·이원 욱·전현희·조승래·송기헌·진영·최운 열·최인호·표창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6. 8. 김관영·이동섭·조배숙·오세정· 김삼화·권은희·주승용·최명길·최도자· 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8. 노회찬·김종훈·정동영·문진국·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용호·서형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17. 6. 9. 김병욱·윤관석·안민석·유은혜· 전혜숙·김민기·이찬열·윤호중·정춘숙· 오영훈·양승조·김병기·김경협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9. 신보라·김선동·함진규·이종배· 김성찬·정갑윤·하태경·박명재·김석기· 경대수·윤종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 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 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 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신창현·강병원·김병기·김영주· 김철민·박주민·박광온·박정·이원욱·유 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석·

표창원·박용진·신창현·최명길·강훈식· 노웅래·금태섭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표창원·이해찬·노웅래·박찬대· 신창현 · 송옥주 · 제윤경 · 권미혁 · 유동수 · 김종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9. 박찬대·김정우·김병욱·채이배· 박범계 · 장정숙 · 안호영 · 박용진 · 박남춘 · 소병훈 · 민병두 · 송옥주 · 노웅래 · 권미혁 · 박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0. 백재현·조승래·김정우·김종민· 박정·소병훈·박남춘·이철희·유동수·윤 관석·송옥주·권미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황주홍·김재원·엄용수·김영춘· 김성찬 · 윤후덕 · 장정숙 · 박정 · 홍철호 · 이 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윤소하ㆍ황영철ㆍ김 철민 · 김용태 · 오제세 · 윤영일 · 신상진 · 백 재현·조배숙·이원욱·유성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2. 김영진·박범계·전혜숙·홍익표· 백혜련 · 서영교 · 이종걸 · 인재근 · 이원욱 · 박찬대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3. 유승희·유동수·어기구·신창현· 제윤경・유은혜・고용진・이용득・김철민・ 권미혁 · 민홍철 · 박정 · 기동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6. 최명길·김병관·이동섭·고용진· 김경진 · 이용호 · 노웅래 · 김영주 · 최운열 · 장병완·김관영·김성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9. 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9. 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천· 이종구 · 지상욱 · 정양석 · 유승민 · 박명재 · 김세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9. 이명수·이양수·박덕흠·전희경· 이헌승 · 여상규 · 홍철호 · 경대수 · 유승희 · 강병원 · 박용진 · 원혜영 · 이철희 · 박재호 · 이태규 · 정인화 · 송옥주 · 윤소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9. 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6. 29. 박주민·권미혁·이용득·신창현· 김상희 · 박남춘 · 유승희 · 윤후덕 · 진선미 · 이재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30. 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상희· 이인영 · 박홍근 · 김영진 · 오영훈 · 설훈 · 정 재호・소병훈・강창일・박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2017. 7. 3. 심재권·유승희·민병두·송기헌· 어기구 · 신창현 · 노웅래 · 정재호 · 박남춘 · 전현희 · 고용진 · 김영호 · 김경협 · 박찬대 · 강창일 · 송옥주 · 김상희 · 백혜련 · 위성곤 · 이재정 · 소병훈 · 김철민 · 김병욱 · 조승래 · 김민기 • 박완주 • 오제세 • 안민석 • 이수혁 • 박광온·심기준·유동수·전해철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7. 7. 4. 이해찬·최경환(국)·신창현·민홍철· 강창일 · 박남춘 · 김정우 · 이원욱 · 조승래 · 김경협 · 윤관석 · 강훈식 · 박용진 · 원혜영 · 진선미ㆍ이재정ㆍ김관영ㆍ추미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7. 7. 유승희·이철희·윤소하·박주민· 원혜영 · 송옥주 · 신창현 · 김철민 · 소병훈 · 정성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1. 박용진·신창현·정성호·고용진· 김정우·유동수·심기준·최명길·민병두· 김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4. 김민기·김해영·손혜원·박경미· 박정·조승래·김병욱·박남춘·안규백·박 주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

(2017. 7. 17. 윤상직·이은권·윤영석·추경호· 박완수·김진태·윤한홍·김석기·주광덕· 정갑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1. 이장우·이종배·이철규·염동열· 김석기·이은재·권석창·이양수·이헌승· 강석진·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1. 정유섭·유동수·곽대훈·최연혜·이채익·김병관·김성원·정태옥·권석창·함진규·김종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1. 박홍근·김해영·변재일·설훈· 위성곤·윤소하·정춘숙·조승래·최명길· 홍익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4. 김명연·김도읍·곽대훈·이채익· 염동열·김정재·박명재·정갑윤·박덕흠· 성일종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

(2017. 7. 27. 추혜선·채이배·박주민·김경진· 노회찬·김종대·김종민·이정미·윤소하· 김영호·권미혁·표창원·한정애·심상정· 이철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 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 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 홍익표 · 이원욱 · 박완주 · 김경협 · 김병욱 · 유은혜 · 송기헌 · 유승희 · 이용득 · 박정 · 강병원 · 김영호 · 최운열 · 김경수 · 전현희 · 기동민 · 김종민 · 위성곤 · 이수혁 · 김병관 · 강훈식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 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 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 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 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 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 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 강훈식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8. 2. 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 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 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

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8. 3. 홍철호·윤후덕·윤한홍·김명연· 박명재·이양수·박덕흠·유민봉·조훈현· 윤영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8. 4. 김해영·고용진·김민기·조승래· 서형수·박재호·전재수·윤호중·박광온· 박홍근·윤소하·이찬열·최인호·서영교 의 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8. 7. 노회찬·추혜선·김종대·심기준· 이정미·김종민·심상정·윤소하·박주민· 김종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8. 9. 정춘숙·김병욱·신경민·권미혁· 소병훈·박정·윤소하·정재호·김현권·양 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1. 김동철・정갑윤・황주홍・장정숙・ 이찬열 · 최경환(국) · 김경진 · 김광수 · 김종 회 · 이동섭 · 장병완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8. 25. 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종· 김명연 · 윤영석 · 이채익 · 곽대훈 · 김기선 · 이헌승 · 민경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7. 8. 28. 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 김영우 ·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경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7. 8. 31. 하태경·주호영·이혜훈·이학재· 이종구 · 김세연 · 정병국 · 유승민 · 박인숙 · 지상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 박남춘·이재정·김두관·진선미· 이훈・김현권・유은혜・윤종오・김정우・ 전해철 · 서영교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7. 9. 1. 임종성·조승래·이춘석·남인순· 강훈식・정춘숙・기동민・이인영・안규백・ 이찬열 · 윤관석 · 문희상 · 김정우 · 김해영 · 제윤경·최운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17. 9. 4. 소병훈·강창일·김영진·김철민· 박남춘 • 박주민 • 설훈 • 인재근 • 정성호 • 추미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 발의)

(2017. 9. 4. 홍문종·지상욱·조훈현·이양수· 권석창 · 임이자 · 이채익 · 김한표 · 김성원 · 함진규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9. 4. 김성원·경대수·김도읍·김정재· 김한표 · 박덕흠 · 박명재 · 박완수 · 엄용수 · 이은권 · 조훈현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9. 5. 이인영·인재근·소병훈·강훈식· 기동민 · 유은혜 · 서영교 · 권미혁 · 임종성 · 설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9. 6. 백재현·소병훈·박범계·노웅래· 김정우 · 이언주 · 이재정 · 이원욱 · 양승조 · 김병욱·조승래·정성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2017. 9. 7. 윤관석·조배숙·장정숙·금태섭· 서영교 · 이철희 · 박광온 · 이수혁 · 정성호 · 김해영·김한정·박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7. 9. 8. 박병석·조승래·김영호·표창원· 소병훈 · 손금주 · 이철희 · 금태섭 · 정성호 · 신창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3. 이종구·정병국·정양석·이상돈· 정운천・홍철호・하태경・오신환・김무성・ 주호영 · 이언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8. 박완수·정종섭·박덕흠·김성원· 곽상도ㆍ이종배ㆍ이은재・곽대훈ㆍ최연혜ㆍ 박맹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1. 박인숙·정성호·김세연·이명수· 이종구 · 정양석 · 오신환 · 유승민 · 김철민 · 정병국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2. 박대출·유민봉·김정재·정갑윤· 정태옥 · 박찬우 · 윤영석 · 김성찬 · 이우현 · 염동열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2. 김성찬·강석호·김정재·윤영석· 박순자 · 송석준 · 윤상직 · 신보라 · 김성태 · 박찬우 · 김종석 · 김한표 · 이채익 · 함진규 · 나경원 · 이장우 · 이완영 · 김재경 · 김학용 ·

장제원·이만희·권석창·위성곤·김철민· 안상수·김한정·김현권·김종회·정인화· 이개호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7. 9. 22. 김성찬·강석호·윤영석·김정재·

박순자 · 윤상직 · 송석준 · 신보라 · 김성태 ·

박찬우 · 김종석 · 김한표 · 이채익 · 함진규 ·

나경원 · 이장우 · 이완영 · 김재경 · 김학용 ·

장제원·이만희·권석창·위성곤·김철민· 안상수·김한정·김현권·김종회·정인화· 이개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5. 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성일종·박인숙·유승민·이명수·이종구·윤영석·윤한홍·정양석·정운천·주호영·하태경·홍문표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25. 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 노회찬·추혜선·김상희·김종훈·윤종오· 채이배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5. 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 노회찬·추혜선·김상희·김종훈·윤종오· 채이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9. 박찬우·김선동·김성원·김태흠· 박덕흠·성일종·이명수·이은권·정유섭· 홍문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11. 윤후덕·노웅래·김병욱·박정· 이정미·임종성·소병훈·박주민·이해찬· 김정우·신창현·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11. 오신환·유의동·김세연·강병원· 박인숙·강길부·김수민·최도자·지상욱· 홍철호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25. 위성곤·황주홍·김현권·김철민·홍문표·이개호·이철희·강창일·김영진·이찬열·신창현·채이배·김병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7. 11. 3. 김영호·소병훈·인재근·표창원· 민홍철·백재현·기동민·정춘숙·김영진· 전혜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9. 유민봉·박성중·문진국·이명수· 강석호·장제원·金成泰·이은권·곽대훈· 홍문표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오세정·손금주·위성곤·신용현· 김삼화·김경진·천정배·최명길·이찬열· 김성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4. 박덕흠·김명연·함진규·김현아· 김성찬·변재일·신보라·김태흠·정운천· 박맹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5. 박덕흠·김명연·함진규·김현아· 김성찬·변재일·신보라·김태흠·정운천· 박맹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5. 함진규·박덕흠·김성태·이우현· 임이자·조경태·박대출·강석진·이종배· 박순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6. 김부겸·김영호·김철민·임종성·김종대·안규백·고용진·기동민·윤관석·민홍철·박정·김상희·김성수·김정우·서형수·소병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29. 천정배·오세정·김광수·장정숙·김동철·박주현·윤소하·박준영·김삼화·김경진·조배숙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9. 천정배·오세정·김광수·장정숙·

김동철 · 박주현 · 박준영 · 김삼화 · 김경진 · 조배숙 · 전혜숙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9. 최도자·김종회·최경환(국)·민홍철· 윤소하 · 오세정 · 김성식 · 정인화 · 김광수 · 이용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 천정배 • 이정미 • 김종대 • 김종훈 • 윤종오 • 원혜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이명수·김성찬·권석창·유민봉· 박순자 · 성일종 · 윤재옥 · 유재중 · 장제원 · 강석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 박성중·송희경·이종구·강길부· 홍문표 · 하태경 · 김학용 · 조경태 · 김현아 · 박순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유성엽·김관영·박주현·박지원· 박준영 · 김삼화 · 오세정 · 김수민 · 김종회 · 조배숙 · 이동섭 · 이상돈 · 최경환(국) · 김광수 · 장정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진선미・민홍철・송옥주・손금주・ 유동수 · 남인순 · 신창현 · 정성호 · 김정우 · 박남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8. 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 이정미・김종대・정춘숙・표창원・양승조・ 정동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2. 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정미 · 김종대 · 윤종오 · 김종훈 · 김상희 · 이철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13. 표창원·원혜영·정성호·안규백· 김영호 · 박찬대 · 박정 · 정춘숙 · 김현권 · 이철희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12. 13. 표창원・원혜영・정성호・안규백・ 김영호 · 박찬대 · 박정 · 정춘숙 · 소병훈 · 김현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12. 20. 이용호·주승용·김삼화·채이배· 장정숙 · 김수민 · 정인화 · 이동섭 · 윤영일 · 권은희·최도자·송기석·김경진·김종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2018. 1. 4. 윤호중·정성호·신창현·김종훈· 김상희 · 정춘숙 · 이현재 · 원혜영 · 윤관석 · 김한정 의원 발의)

이상 187건 2018년 1월 1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2018. 1. 18. 김동철·정성호·이태규·김광수· 최도자 · 김중로 · 정동영 · 권은희 · 하태경 · 박주선 의원 발의)

1월 19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6. 8. 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근용 외 1인으로부터 진선미 · 권미혁 · 김종훈 · 남인순 · 박주민 · 신동근 · 이재정 · 이정미 · 이학영 · 정춘숙 · 홍익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 2016. 10. 18. 한국정치학회장 강원택 으로부터 김세연·유승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3.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외 2인 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3.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9. 우리미래 공동대표 이성윤 외 7인 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2017. 9. 20.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김낙경 외 16인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5. 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동섭으로 부터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5. 정치개혁 부산행동 고호석 외 7인 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목 외 3인 으로부터 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외 3인 으로부터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문창기 외 13인으로부터 이상민·김광수·변재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 2017. 9. 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외 3인으로부터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10. 17.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권수현 외 3인으로부터 남인순·권미혁·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11. 22. 곽노현 외 2인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18건 2018년 1월 17일 회부됨